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성중기 의원 외 12명

나. 의안번호 : 제2462호

다. 제출일자 : 2021. 05. 27.

라. 회부일자 : 2021. 06. 01.

2. 제안사유

○ 서울시가 2017년 고령사회로 진입 이후 초고령사회로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위해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

○ 이에 복지관, 경로당,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관련법에 따라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필요시 안전한 보행길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시설물과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토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행우선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나. 안전한 보행길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시설물과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6. 4. ~ 6. 11.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1)]

○ 제출의견 : 원안 가결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1) 보행정책과-7091호(2021.6.10.)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 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고자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많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시장이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

나. 검토 의견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련(안 제6조의2 관련)

○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보행우선구역·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이에 대한 보행안전시설 우선설치, 차량 운전자에 대한 홍보 실시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제18조[2]에 따르면 시장은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보행우선구역'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 ①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을 지정할 수 있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 제9조[3]에서는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및 ‘보행우선구역’ 등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인·장애인의 보행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관련법에서 시장이 ‘보행우선구역’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기 위해 지정계획[4] 및 개선사업계획을 수립[5]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보행안전시설물 설치와 노인·장애인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을 경찰과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 할 것임

---

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 이하 생략-

②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이하 “보행환경개선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2.「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보행우선구역의 지정) ② 시장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우선구역을 지정하려면 보행우선구역의 지정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① 특별시장등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아울러,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과 노인·장애인에 대한 교통안전을 인식시키기 위해 홍보토록 하는 것은 해당지역의 보행자 특성을 운전자가 인지토록 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한편, 서울시의회는 ’21.1.7일자 동 조례 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노인보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전통시장 주변도로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서울시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6]하는 등 교통약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증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보호구역에서의 조치 관련(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관련)

○ 동 개정안은 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7]에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비탈길과 계단길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보행보조시설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6) 보행정책과-2770호(2021.3.2.) “2021년 서울시 노인보행사고 개선사업 추진계획”
- **노인보호구역 지정 총 13개소 예정** : **전통시장 4개소**, 주거·의료·여가복지 시설 9개소

7)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도 설치가 기본 사항이나 도로 여건상 보도와 차도 구분이 불가능하여 보행자가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해야하는 경우,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도색, 자동차 진입억제용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물리적으로 안전한 보행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비탈길과 계단길에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와 노인·장애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